

창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가합551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림

담당변호사 박경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D(김해시 E, F 대표)과

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항 채권에 관하여 2020. 3.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6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나.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2.항 채권에 관하여 2020. 3.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소외 D에게, 주식회사 G이 2020.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년 금제2469호로 공탁한
695,304,940원 중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34,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나. 피고 C은 82,5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다. 피고들은 소외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 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는 은행이다.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D은 ‘F’이라는 상호로 김해시 E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들에게 D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납품대금채권을 각 양도한 사람이다.

나. H 사용후연료 건식저장시설 저장실린더 납품계약

1) G은 2018. 4. 5.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번호 J로 H 사용후연료 건식저장시설

저장실린더 외 2종 품목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그 무렵 1) G와 사이에 위 I으로부터 발주 받은 'H 사용후연료 건식저장시설 저장실린더' 150세트(1차분 40세트, 2차분 40세트, 3차분 40세트, 4차분 30세트)를 4,948,350,000원(부가세포함)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G과의 납품계약'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2018. 4. 30. D과 사이에, 위 1)항의 H 건식저장시설 내부 저장설비 제작 용역과 관련한 사항 중 완성제품 표면처리(샌딩, 아연용사코팅, 마감도장) 일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2,399,600,000원에 공급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

물품구매계약서

제2조(기간)

가. 전체 280set 중 4set 단위로 7회에 걸쳐 공급하며 일정은 아래와 같다.

1차(2018. 12. 18.) 40set

2차(2019. 2. 19.) 40set

3차(2019. 4. 23.) 40set

4차(2019. 6. 25.) 40set

5차(2019. 8. 27.) 40set

6차(2019. 10. 24.) 40set

7차(2019. 12. 24.) 40set

제3조(대금의 지불조건 및 계약보증)

가.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D은 피고 회사에게 (set@88,570,000*280set) 합계: 2,399,600,000 원을 지불한다.

나. 상기 대금의 지불일은 납품완료(분납일) 기준 익월말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통지문 발송

피고들은 2020. 3. 17. '미상환 차용금 100,000,000원(=원금 65,000,000원+이자

35,000,000원)과 이 사건 물품의 1~3차분까지의 미수대금 60,000,000원을 2020. 3. 25.까지 입금 처리 하라. 이 사건 물품 4차분 작업에 대해서는 4차분 대금을 피고 회사가 I로부터 직접 결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증약정서를 제시하여 주면 작업재개 하도록 하겠다. 납기에 관련한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D에게 있다'는 취지의 통지문(이하 '이 사건 통지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이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라.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1) D은 G과의 납품계약에 기한 695,304,940원 상당의 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D은 2020. 3. 24. 피고 회사에게 G에 대한 위 1)항의 잔대금채권 중 434,000,000원(=4차분(40set) 373,000,000원+미지급금 60,000,000원)을 양도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20. 3. 31.경 G에 도달하였다.

3) D은 2020. 3. 24. 피고 C에게 G에 대한 위 1)항의 잔대금채권 중 82,500,000원(=차용금 65,000,000원+차용이자 17,500,000원)을 양도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20. 3. 31.경 G에 도달하였다(이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마. 원고의 D에 대한 지급명령결정

원고는 2020.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차1622호로 'D은 원고에게 2,311,017,625원 및 이에 그 중 2,187,797,572원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9. 3. 확정되었다.

바. 원고의 채권가압류와 G의 금전공탁 경과

1) 원고는 2020.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카단635호로 D의 G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20. 5. 18. 위 신청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인용되었다.

2) G은 2020.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년 금제2073호로 695,304,940원을 피공탁자를 D 또는 피고 회사로 하여 '채권양도의 유효여부를 알 수 없고 그 후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도달하여 경합되어 공탁자로서는 수취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공탁원인 사실로 혼합공탁 하였다.

3) 원고는 2020. 10.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K 채권배당사건에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한 보정명령을 수령하였는데, 위 보정명령에는 '이 사건은 G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금 제2073호(공탁금: 695,304,940원)로 변제 및 집행공탁한 사건으로, 위 보정명령에는 피공탁자가 D 또는 피고 회사로 되어 있고(상대적 불확지공탁), D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권자가 있는바(집행공탁), 위 공탁원인 사실에 의하면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으나 양도인(D)과 양수인(피고 회사)간의 채권양도계약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K 채권배당사건은 2020. 11. 13. 불수리로 종결되었다.

4) G은 2020.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년 금 제2469호로 수 개의 가압류,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과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가 경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들 또는 D으로 하여 695,304,940원을 혼합공탁 하였다.

사. 피고들의 D 및 원고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경과

1) 피고들은 2020. 10. 22.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6226호로 D과 원고를 포함한 가압류,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장은 원고에게 2020. 10. 29. 도달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1. 11. 25.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나1471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22. 9. 15. 'G이 2020.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년 금제2469호로 공탁한 695,304,940원 중 434,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82,5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10. 29.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5. 14. D의 G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할 무렵 G에 대한 위 채권이 D의 유일한 재산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계약통지서가 첨부된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2020. 10. 7. 무렵에는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한 시점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다. 판단

원고가 2020. 5. 14. D의 G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20. 5.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2020. 10.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K 채권배당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법리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정명령에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되어 있었기는 하나, 위 보정명령에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으나 양도인(D)과 양수인(피고 회사)간의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보정명령의 내용만으로는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와 채권양도의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정도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이 2020.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년 금제2073호로 695,304,940원을 공탁한 것과 관련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K 채권배당사건이 2022. 11. 13. 불수리로 종결되었고, G은 2020.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년 제2469호로 다시 695,304,940원을 혼합공탁하였는데, 위 공탁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장이 2020. 10. 29.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2021. 10. 7. 1심 변론이 종결되었는바, 원고는 피고들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비로소 관련 증거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경위 등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정명령을 수령한 2020. 10. 7. D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것을 넘어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무자력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장래 채무인 4차 기성 납품대금 374,000,000원 외에 피고 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 60,000,000원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82,500,000원의 이행과 관련하여 G에 잔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지급받을 4차 기성대금 374,000,000원을 초과한 피고 회사에 대한 6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82,500,000원의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위 범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D의 무자력 및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20. 3. 24.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D이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29. 기준 D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9. 4. 18.까지 발생한 2,311,017,625원(=미상환원금 2,187,797,572원+미수이자금 123,220,05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참조).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원고에 대하여 원금만 2,187,797,572원의 채무가 있고 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G에 대한 잔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양도한 채권액인 434,000,000원 중 60,000,000원은 피고 회사가 지급받을 대금이 아니라 미지급 대금이고, D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차용인인 D이 날인한 차용증은 찾아볼 수 없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의 1)항의 법리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① D, 피고 회사, G, I 사이의 H 사용후연료 건식저장시설 저장실린더 외 2종 품목 납품 계약 구조는,

I-G-D-피고 회사의 순으로 피고 회사가 D에게 물품을 납품하면, D이 이를 G에 납품하고, G이 이를 I에 순차적으로 납품하는 구조이다. D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D에게 이 사건 물품을 7차에 걸쳐 각 40set 씩 납품하고, D은 피고 회사에게 납품완료 다음달 말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D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9. 12.경 3차분 물품을 납품받고도 이 사건 채권양도일 무렵까지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② D에게, 피고 C과 피고 회사는 2017. 9. 25. 500만 원, 2017. 9. 25. 2,500만 원, 2017. 9. 25. 2,000만 원, 2019. 1. 10.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 측 L은 2019. 6. 10. D 측 M2)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D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된 2018. 4. 30. 이전 및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이 납품되고 있던 무렵 사이에 피고들 측이 D 측에게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거래에 대하여 D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찾아볼 수 없고, 위 금액 중 일부는 피고 C 개인이 아닌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기는 하나, 피고들이 D에게 발송한 이 사건 통지문의 내용에 위 입금일자를 특정하여(다만 2019. 6. 10.자 1,000만 원이 2019. 8. 10.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월일 중 월의 기재만 다르고 일자와 액수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D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6,500만 원을 차용금 원금 합계액으로 특정하고 있는바 입금일자와 합계액이 일치하는 점, D이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금액 82,500,000원의 내역을 차용금 65,000,000원, 차용이자 17,500,000원으로 기재하였는바 D은 위 금액을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 C에 대하여 대여원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750만 원 합계 8,25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통지문의 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물품 3차분에 대한 잔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기발생한 미지급 대금 6,000만 원 및 대여금 1억 원(=대여원금 6,500만 원+이자 3,500만 원)의 지급을 2020. 3. 25.까지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물품 4차분 대금을 I으로부터 직접 결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면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D은 자금이 경색되어 피고 회사가 더

이상의 물품 납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을 납품받으려면 미지급대금 채무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고 4차분 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피고 회사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가 최고한 지급기일인 2020. 3. 25. 하루 전날인 2020. 3. 24.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구조가 D이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G에 납품하고, G은 이를 I에 납품하는 순차적 구조였으므로, 거래의 중간에 있는 D이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납품이 중단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D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G으로부터 하수급인인 피고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G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D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이 사건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D이 당시 무자력이었고 거액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체결 전 및 물품구매계약에 기한 납품 중이었던 시기에 하수급인인 피고 회사의 대표가 수급인인 D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경위를 고려하면 ‘D이 I과의 계약 체결 및 제작 등에 필요하다며 피고 C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 피고들이 ‘기존 대여금 채무와 미지급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4차분 물품대금을 직접 결제 받도록 하여 주면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서 D이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G, I에게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이에 응하게 된 경위를 살펴 보면,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역시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라기보다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열, 판사 이학근, 판사 강은지

1) G과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18. 12. 4.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G과 D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I으로부터 납품을 의뢰받았다'고 주장하고, G과 D이 계약을 체결한 후 D과 B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G과 D이 이 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피고 회사와 D의 계약체결일인 2018. 4. 30.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2) 위 L과 M가 피고들 및 D과 각 어떠한 관계인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원고와 피고들 모두 L은 피고들 측 사람이고, M는 D 측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